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31일, 정희용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6.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의원)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용훈)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사를 채용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검역사로 하여금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현행법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동·축산물 검역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족한 검역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수의직의 처우개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 중이나 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 중인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영국, 호주, 미국 등과 국내 유사 입법례에서 보조인력 운용으로 검역관 부족 문제를 해소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검역업무 중 수의학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기존 검역관이 담당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검역사가 담당하도록 검역관의 보조인력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검역의 전문성과 효

유행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2) 대한수의사회

동물검역사 신설에 동의하며, 동물검역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정에서 동물검역사에 대한 업무 규정, 자격요건 및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검역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동물검역관에 대한 직급상향,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수출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축산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확대 및 국제 교역량·해외 여행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동물 검역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최일선에서 방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물검역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동물검역관의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4.12. 기준) 동물검역관 정원은 225명인데 결원은 47명으로, 정원 중 약 21% 정도가 결원 상태임.

또한, 수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고 격무인 동물검역관 업무를 비선호함에 따라 신규 충원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상 모든 검역업무를 동물검역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의학 관련 전문지식을 비교적 요하지 않는 휴대품 개봉 등의 단순 업무도 의사인 동물검역관이 전부 수행함에 따라 결원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동물검역관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역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최종 판정 및 수출입 동물 검역 등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② 수출입 축산물 검역 관련 단순 확인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업무 등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비교적 요하지 않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② 기타 관리업무의 경우 단순 확인 업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자격을 갖춘 동물검역사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검역 등 유사 업무의 보조 인력 운용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검사원,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야생동물검역사,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가축방역사가 있음.

상기 유사 입법례의 인력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와 비교적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업무를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① 현행 동물 검역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타 관리 업무의 경우 수의분야 전문지식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② 개정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물 검역 수요 증가에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가축전염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사 입법례에서 보조인력을 채용·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검역사 채용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동물검역사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 검역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법에 따른 동물검역 대상은 ① 동물과 그 사체, ② 축산물 등 그 이외의 것으로 구분되는데, 동물의 경우 살아있는 개체로서 질병의 주요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가축 등 다른 동물에 전염되어 대규모의 가축 살처분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 중에는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있는바, 이는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음.

반면에, 축산물 등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과 달리 이미 도축 및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병을 능동적으로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낮아 질병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검역사가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동법 제5조 및 제30조 등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동물검역사의 업무 범위를 “동물”에 대한 검역 보조까지 규정할 경우 검역 전문성 저하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수의사인 검역관이 모든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① 미국의 경우 우편·휴대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② 영국·아일랜드의 경우 상업용 또는 개인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만 검역관의 검역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따라서, ① 동물 검역의 경우 축산물 등의 검역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②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보조인력이 일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만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물검역사가 “모든 동물 검역”에 대한 보조가 아닌, 현행법 제31조제1호(동물과 그 사체)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